

##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정승철\*

### 차례

- I. 머리말
- II. 방언 표기법의 원리
  -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 2. 한글 맞춤법과 방언 표기법
- III. '제주어 표기법'(1995)의 검토
- IV. 맷음말

### I. 머리말

방언 표기법은 일정한 文字로 한 언어의 방언을 표기하기 위해 정한 규칙의 체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는 방언 표기법은 한국의 방언, 특히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이때의 방언 표기법이란 제주방언을 '한글'로 적기 위해 마련한 표기 원칙의 총체를 말하게 된다.

이러한 방언 표기법은 해당 방언의 단어나 문장을 정확히 표기할 목적으로 想定된다. 그러기에 방언 표기법은, 그것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표기의 '정확성'에 두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정확성이 반드시, 표기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발음'에 일치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와 소리를 1:1로 대응시켜 그대로 적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그리 적었다 하더라도 讀者가 그 표기를 쉽게 이해하리란 보장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정확성'은, 해당 표기법이 그 방언의 언어적 정보를 얼마나 합리적(또는 규칙적)으로 전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표기의 정확성은 원칙의 일관성을 수반할 때 의의를 가진다. 표기 원칙의 내용 또는 그 원칙의 적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표기법이 해당 방언의 언어적 정보를 합리적(또는 규칙적)으로 표기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표기 원칙의 '일관성'은 방언 표기법의 좋고 나쁨(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편 방언 표기법에서 표기 방식의 선택은 그 이용자(筆者 및 讀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기법 이용자가 방언(또는 언어) 연구자인 경우에는 표기 원리가 어떠하였든 원칙의 일관성만 잘 유지되면 표기법 사용이나 이해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sup>1)</sup> 그렇지만 이용자가 방언(또는 언어) 연구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표기 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쓰고 읽는 데 있어 그 편리성 또는 효율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가령 쓰기에 편하지만 읽기에는 불편한 표기 방식과 읽기에는 편하지만 쓰기에 불편한 표기 방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표기의 원칙을 정하는가에 따라 문자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sup>2)</sup>

\* 이 논문은 2004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INHA-31562-01)

\*\* 이 논문은 2007영주어문화학회 학술대회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할까?'(2007.11.2.)의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방언에 대한 형태음소적 표기를 위해서는 각 방언형들의 기저형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된다(後述). 따라서 기저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언을 표기할 때는 음소적 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익숙하지 않은 방언을 조사하여 전 사하는 데 IPA 기호가 선택되는 것은 실재적 필요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형태음소적 원리에 의한 표준 표기법이 방언 표기에 간접 할 가능성이 매우 높후한 경우에는 IPA조사가 더욱 유용할는지도 모른다.
- 2) 표기법이 사용과 이해의 측면 중 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쪽, 구체적으로 말해 인쇄와 독서(또는 작문과 독해) 중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쪽에 기반을 두고 정

## II. 방언 표기법의 원리

일반인을 위한 방언 표기법에서는 ‘이해’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바 그런 까닭에 대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sup>3)</sup>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른 바 “表意主義”를 표방한 한글 맞춤법은 “각 形態素의 基本形”을 “字形까지 固定시켜 표기”하여 하나의 형태소가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간직하게 함으로써, “表音主義”를 따르는 표기법보다 이해의 차원에서 훨씬 더 큰 便益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李翊燮 1992:381-383). 따라서 방언 표기법의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현행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제1장 총칙 제1항’에 선언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에는 표기법의 두 원리, 즉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라는 두 원리가 하나의 조항 속에 포괄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소리대로’는 “表音主義”的 원리, ‘어법에 맞도록’은 “表意主義”的 원리를 나타내므로 결국 제1장 총칙의 제1항은 “두 원리를 適正한 線에서 잘 調和”(李翊燮 1992:390)시켜 표기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되는 셈이다.

이 규정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서 ‘어법에 맞도록 함’이

---

해져야 함은 李翊燮(1985:30)의 논의를 참조.

3) 한글 맞춤법의 형성 과정 및 그 원리에 대해서는 李基文(1963), 李翊燮(1985), 申昌淳(2003), 정승철(2005) 참조. 한편 이 글에서의 ‘한글 맞춤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가리킨다.

란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 (2ㄱ).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등.
- 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짚다, 짚고, 짚어, 짚으니 등.

(2ㄱ)은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1절(체언과 조사) 제14항의 내용, (2ㄴ)은 제2절(어간과 어미) 제15항의 내용을 간략히 옮겨 놓은 것이다. 이는 체언 어간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으라는 규정이다. 물론 그것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표기의 문제와 관련된 조항이기도 하다.

여기서 ‘밭이[바치]’, 밭만[반만], 짚다[점따]’의 예를 고려하면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체언과 용언, 그리고 어미(조사 포함)는 모두 해당 형태소의 기본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표면형으로는 ‘밭, 반’, ‘점-’, ‘-따’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표기할 때는 각각 그 기본형 ‘밭’, ‘짚-’, ‘-다’로만 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이러한 차원에서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는 곧 “形態素 表記의 單一化”(李基文 1983:71)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밭을, 짚어’를 ‘바틀, 절머’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형태소 표기를 기본형으로 단일화하여 적되 “字形까지 固定시켜 표기”하라는 원리(李翊燮 1992:383)를 표명한 데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해 규정 (2)에는 체언과 조사, 그리고 용언과 어미에 대해 ‘표면형’이 아니라 ‘기본형’을 적되 그 사이에 경계를 두어 표기하라는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sup>5)</sup>

- 
- 4) 기본형은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 여러 이형태들 중에 그 형태소를 대표하기 위해 정한 이형태로 정의된다(李翊燮·任洪彬 1983:112). 이때 어느 이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하느냐는 다른 이형태의 도출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 5) 이 규정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내용이 있다.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을 구별하여 적으라는 (2)의 조항이 ‘와(來), 세워(立)’ 등에서 보듯,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본형의 “字形”을 고정시켜 표기하되 그것도 ‘소리대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와, 세워’ 등은 절대로 ‘오아, 세우어’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꼬-(索)처럼 자음을

그것이 바로 (1)의 ‘어법에 맞도록 험’이란 표현이 의미하는 바다.

- (3ㄱ).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길이, 걸음, 같이, 밝히 등.
- 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꺾꽂이, 엇나가다 등.

(3ㄱ)은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3절(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3ㄴ)은 제4절(합성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의 대략적 내용이다. 이들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어기와 어기, 또는 어기와 접사를 구별하되 어기나 접사 등 각 요소의 原形을 밝혀 적으라고 한 규정이다.

그런데 (3ㄱ)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대상은 명사파생의 ‘-이’나 ‘-음/-ㅁ’과, 그리고 부사파생의 ‘-이’나 ‘-히’와 결합하는 어기에 한한다. 이때의 명사파생 또는 부사파생의 요소는 대개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인정받는 접사, 이를테면 음운론적이나 의미론적으로 규칙성을 보이는 접사다. 또 (3ㄴ)에서 원형을 밝혀 적으라 한 대상 역시, 그 소리나 의미가 규칙적으로 예측되는 것들로 한정된다. 선행 또는 후행하는 요소가 가지는 소리와 의미가 일정하여 그들이 결합한 형태의 전체적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선행 또는 후행 요소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3)에서의 ‘原形’은, 공시적으로 분석되는<sup>6)</sup> 동시에 “字形까지” 고정된 형태소의 기본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頭音으로 하는 경우에는 활음화가 수의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다음의 제5절(준말) 제35항에서 보듯이 “字形까지 固定시켜 표기”하는 원칙을 ‘본말’에서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나/거, 났/겼’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꼬아(본말), 꽈(준말) 등.

6) 단어 형성(word formation) 자체를 통시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최명옥(2007)을 따르면 이들은 공시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때의 ‘공시적으로 분석’된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언급이다. 해당 형태가 분석 가능한지 또는 생산성을 가졌는지 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해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요약건대 한글 맞춤법 규정의 ‘어법에 맞도록 함’은, 공시적 차원에서 형태소의 기본형을 서로 경계 지어 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원칙의 적용은 항상, 어떤 형태가 두 개의 요소로 분석되는지 또 그리 나누어진다면 각 요소의 기본형은 어떠한지 하는 문제와 결부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기본형을 “字形” 까지 그대로 고정시켜 적음으로써 독해의 능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이란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로 미루어 볼진대, ‘소리대로’는 두 요소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 또는 기원적으로는 복합어였더라도 공시적으로는 단일어로 인식되는 형태에 적용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4)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4)는, 위 (3)의 규정 즉 제4장 제4절 27항 규정에 [붙임 2]로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두 요소로 분석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는 그 기본형 자체를 ‘소리대로’ 적으라는 말이다. 이처럼 공시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를 적을 때 구성 요소 또는 기존의 표기에 대한 정보는 고려될 여지가 없다. 이른바 표기의 “非歷史主義”(李翊燮 1992:375)를 내포하는 셈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음절 종성의 ‘ㅅ’이나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의 표기에 한해서는 이전의 표기 습관을 반영하게도 한다.

(5) ㄱ.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뜻자리, 무릇, 옛 등.

- ㄴ. ‘계, 례, 예, 폐, 혜’의 ‘ㅔ’는 ‘ㅖ’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혜택(惠澤)(O) 혜택(x) 등.
- ㄷ.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희망(希望)(O) 히망(x) 등.

(5)는 각각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3절('ㄷ'소리 받침)의 제7항, 제8항, 제9항인데 (5ㄱ)은 음절 종성 위치에서 'ㄷ'으로의 실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ㄴ)과 (5ㄷ)은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에 한해 '소리대로'의 원칙에서 벗어남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後者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제4장(한자어)의 제36항, 제39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한자어이므로 그 本音을 고정시켜 적게 한 셈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는 '계집(○), 계집(✗)'이나 '널리리(○), 널리리(✗)' 등의 예가 제시되었는바 이전의 표기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태도를 우리말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한편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2절(어간과 어미) 제18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9개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두 예(4, 6)만 들어본다.

(6)ㄱ. 어간의 끝 'ㅌ, ㅡ'가 줄어질 적. 끄다: 꺼, 꼰다 등.

ㄴ.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등.

(6)은 '소리대로'의 원칙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6ㄱ)에서처럼 음절이 줄어들거나, (6ㄴ)에서처럼 이형태의 불규칙적 교체가 이루어질 때<sup>7)</sup> 소리대로 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절이 축약되거나

7) 앞에서 '어법에 맞도록' 원리는 형태소 표기를 단일화하여 '기본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에 대해 기본형을 적게 하면 언어 현실에 어긋나게 된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에서 형태소 표기를 단일화하지 않고 '기저형'을 적도록 하였다면 위의 (6)에서 언급한 제4장 제2절 제18항의 규정은 굳이 덧붙여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물론 음절의 탈락이 이루어진 (6ㄱ)의 경우만을 제외하고서의 이야기다). 이때의 기저형이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형태소의 음운 정보"를 가리키는바 "다중기저형" 등의 용어에서 보듯, '기본형'과 달리 하나의 형태소에 대해 여러 개의 기저형이 설정될 수도 있다(김

교체 방식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단일화한 기본형을 적게 하면 ‘꼬어, 맵어’ 등에서 보듯, 그러한 표기가 언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을 고려한 처사다.

결국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적는 원리는 두 요소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 그리고 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경우에는 음절의 축약이나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형태에 한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절 종성의 ‘ㅅ’이나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의 경우에는 이전의 표기 습관을 인정하기도 한다.

## 2. 한글 맞춤법과 방언 표기법

이 글에서 논하는 방언 표기법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방언형을 적는 방식을 이르나, 방언에 대한 학술적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사(transcription)’와는<sup>8)</sup> 구분되어야 한다. 後者는 방언(또는 언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 前者は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언 표기법에서 ‘이해’의 측면을 중시한 표기 방식이 선택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원용된다.

앞 장에서 살핀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분석되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적되 그 사이에 경계를 두어 표기하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인데 이는 두 요소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 그리고 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경우에는 음절의 축약이나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원칙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리대로’가 아니라 이전의 표기 방식대로 적기도 하는

성규·정승철 2005:105). 물론 기저형도, 한 형태소가 보이는 “음성 형식의 교체를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김성규·정승철 2005:274).

8) 전사는 제보자로부터 제공되는 조사 대상 언어의 음성을 일정한 부호나 문자로 기록하는 일을 가리킨다(곽충구 2001:292). 넓게 보면 ‘방언 전사’도 방언 표기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데 이때는 음절 종성의 ‘ㅅ’이나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의 표기로 한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방언 표기법의 원리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시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2) 둘 이상의 공시적 요소로 분석되는 형태소는 각각의 기본형을 그 사이에 경계를 두어 적는다. (3) 규칙적 교체를 보이지 않는 형태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sup>9)</sup> (4) 둘 이상의 공시적 요소로 분석되는 형태이더라도 음절이 줄어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다만 음절 종성의 ‘ㅅ’이나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는 이전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서술상의 변개가 필요하다. 방언 표기법에 있어 이전의 표기 방식이란 대개 그 존재 자체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전의 표기 방식이 곧 한글 맞춤법에 의한 표기 방식이 된다.<sup>10)</sup> (5) 변화가 진행 중인 형태는 변화 이전의 형태를 적는다. (6) 음절 종성의 ‘ㅅ’에 한해서는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그런데 방언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한글 맞춤법은 그 표기의 대상으로, 정해진 표준어를 가지고 있지만 방언 표기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면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방언 표기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 성격을 규범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범적 성격의 방언 표기법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표준 방언형’의 疋定을 위해서 방언의 ‘공식어(=文語), 한자음, 표준 벌음’ 등에 대해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 
- 9) 방언 표기법의 대상으로 ‘기본형’ 대신 ‘기저형’을 택하면 원칙 (2)와 (3)을 합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원칙으로 기술하는 일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공시적 요소로 분석되는 형태소는 각각의 기저형을 그 사이에 경계를 두어 적는다.
- 10) 제주방언의 경우,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1995)이 ‘이전 표기 방식’의 예가 될 수도 있으나 공식화의 기간이나 합의의 측면을 고려하면 그러한 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한편 방언 표기법의 대상이 되는 ‘방언’이란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언어의 변종”(최명옥 1998:201)을 말한다. 따라서 각 방언들은 동등한 가치와 지위를 지니며 그러기에 한 방언의 표기를 위해 다른 방언(표준어 포함) 또는 다른 방언의 표기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한글 맞춤법’에 의한 표기만큼은 방언형을 표기하는 데 간섭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이 방언 표기법의 원칙 속에 투영되어서는 곤란하다. 표기법의 일관성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표기법 규정이 아니라 그러한 표기법의 부수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한 부수 규정에는 해당 방언의 규칙적 음운 변동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방언 표기법에서 공시적으로 분석되는 형태소는 각각의 기본형을 적기로 하였는바 이때 두 기본형 사이에서 일어나는 규칙적 음운 변동이 문제가 된다. 한국어 공통의 음운 변동이라면 굳이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방언 특유의 규칙적 음운 변동의 경우에는 따로 밝혀 두지 않으면 해당 표기를 어찌 발음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긁고’란 표기는 그것을 어찌 발음하는지, 즉 [글꼬]나 [극꼬] 중 어느 쪽으로 발음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표기법의 부수 규정 중에 일종의 ‘방언 표준 발음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III. ‘제주어 표기법’(1995)의 검토

이른바 ‘제주어 표기법’이란 이름으로 공포된 제주방언 표기법은 총 4장 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제1장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따른 표기법임(7ㄱ)을, 그리고 제2항에서는 규범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을 띤 표기법임(7ㄴ)을 명시하고 있다.

(7)ㄱ.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ㄴ.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표기법은, 표준 방언형을 정하지 않고 제주 지역에서 발화되는 모든 형태의 기저형에 대해 방언 표기법의 원리(앞 장에서 언급)를 준용하여 적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 된다.<sup>11)</sup>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음 조항은 잉여적이다.

- (8ㄱ). 「ㄱ」이 「ㅣ」나 「ㅑ」, 「ㅋ」와 결합될 적에 「ㅈ」으로, 「ㅎ」이 「ㅣ」나 「ㅑ」, 「ㅋ」, 「ㅍ」과 결합될 적에 「ㅅ」으로 소리나는 것은 각각 「ㄱ」과 함께 「ㅈ」, 「ㅎ」과 함께 「ㅅ」으로도 적는다. 겨를·즈를·저를, 혀·세<sup>12)</sup> 등.
- ㄴ. 「며, 벼, 페」의 「ㅌ」은 「ㅔ」 또는 「ㅣ」로도 소리나므로 「ㅌ」과 함께 「ㅔ, ㅣ」로 적는다. 면장·멘장·민장(面長) 등.
- ㄷ. 연결어미 「-면」은 소리나는 대로 「-면-문-민」으로 적는다. 가면·가문·가민 등.

(8ㄱ)은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1절(구개음화) 제5항, (8ㄴ)은 제2절(모음) 제10항, (8ㄷ)은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2절(어간과 어미) 제20항이다. 그런데 제1장의 표기법 총칙에서, 제주 지역에 출현하는 모든 방언 형을 적기로 했으므로 (8)의 수의적 변이형태들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조항을 두어 표기 여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sup>13)</sup> 실현되는 대로 그 기저

11) 방언 표기법에서 기술적 성격이 엄격해지면 학술적 차원에서의 '전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리되면서 약간의 형태 차이도 반영하여 적게 되므로 한 단어에 대해 형태를 달리하는 수많은 동의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적 성격의 방언 표기법은 일반인들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혀'와 '세'는 이른바 「ㅎ>ㅅ」의 구개음화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절한 예가 아니다.

13) 총칙 제2항의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다. 제주 지역에 출현하는 모든 방언형을 "표기 대상"으로 하되 형태차를 그대로 반영할지, 아니 할지는 세부 규정에 따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8)과 같은 예에 대해

형을 그대로 적으면 그만이다.

또 이 표기법에서는 공식적으로 분석되는 형태소에 대해 그 기본형을 경계를 두어 적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원칙의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예가 보인다.

(9)ㄱ.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새백(晨) : 새백의 등.

ㄴ. 밗(外) : 밗고, 끊(末) : 끊틔, 밋(底) : 밋틔<sup>14)</sup>

(10) 종결어미 ‘-저’와 ‘-주(-쥐)’는 ‘-찌’와 ‘-쭈(-쥐)’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 ‘-주(-쥐)’로 적는다. 먹엄저(○), 먹엄찌(×) 등.

(9)는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1절(체언과 조사) 제13항인데 이 규정을 문맥대로 이해할 때 (9ㄴ)의 ‘밭고, 끊틔, 밋틔’는 ‘밭-고, 끊-틔, 밋-틔’로 분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때의 처격조사 ‘-고’와 ‘-틔’는 선행 어기의 말음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들은 ‘밖(外)-의, 끝(末)-의, 밑(底)-의’로 분석되며<sup>15)</sup> 그러기에 표기할 때는 ‘밖의(“밖에”), 끝의(“끝에”), 밑의(“밑에”)’로 적어야 한다. 물론 표준어의 ‘트’말을 어기에 대응하는 일부 단어로서 처격조사 ‘-듸’와<sup>16)</sup> 결합하는 ‘배겟(外), 밗(田), 솟(鼎)’ 등은 처격조사가 연결될 때 ‘배겟듸, 밗듸, 솟듸’로 적는다.

(10)은 제4장 제2절(어간과 어미) 제21항인데 ‘-저, -주’가 ‘-찌, -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미 자체의 수의적 변이형태로 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 [먹엄찌]는 ‘먹-없-저’로 분석되며 이때의 [-찌]는 선어말어미 ‘-없-’ 뒤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언급한 것은 역시 임여적이다. 형태상의 차이를 표기해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4) 이 예들은 제주방언 고유의 형태라기보다는 표준어형과의 혼효를 통해 생성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도 표준 방언형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15) 이때의 처격조사는 음성적으로 ‘-이’로 실현되나 ‘밑-이(처격)’의 연결에서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저형은 ‘의’라 할 수 있다. 이는 15세기 문헌 어의 특이처격조사 ‘의/이’에 기원하는 형태다(정승철 1995:190). 그렇지만 제주방언에 공식적인 구개음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저형을 ‘-이’라 해도 무방하다.

16) 이 또한 기원적으로는 선행 어기의 말음을 포함한 것이지만(정승철 1995:198-202) 공식적으로 분석될 수 있지는 않다.

서 종결어미 ‘-저’의 頭音이 경음화를 겪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시제의 선어말어미는 기저형이 ‘-값/없-’이므로<sup>17)</sup> 용언 어간 및 종결어미와 결합될 때 ‘먹없어(“먹어”), 먹없저(“먹는다”), 값어(“가”), 값저(“간다”)’ 등으로 적어야 표기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해당 표기법 조항에 적절하지 않은 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 (11)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려’로 바뀔 적. 가르고/가르지/갈란, 갈르고/갈르지/갈란 등.

(11)은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2절(어간과 어미) 제15항으로 그 해당 예로서 ‘갈르고’ 계열의 어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으’탈락의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이므로 오히려 제16항의 규정(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ㅏ/-ㅓ’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가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고프다, 고판 등.)에 들어맞는 예다.

한편 이 표기법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해서는 대개, 보수적인 형태를 적도록 하고 있다.

- (12) ㄱ. ‘·’는 ‘ㅏ’나 ‘ㅗ’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 드리(橋)(○), 도리·더리(✗) 등.  
 ㄴ. ‘··’는 ‘ㅕ’나 ‘ㅑ·ㅕ’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 으든(○), 요든·야든(✗) 등.  
 ㄷ. ‘ㅐ’는 ‘ㅔ’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ㅐ’로 적는다. 개(犬) 등.

17) 정승철(1997) 참조. 이 선어말어미는 ‘으’계 어미 앞에서 ‘-암시/엄시-’로 교체된다; 감시니? 먹엄시니? 한편 선어말어미 ‘-값/없-’의 표기에 대해 인쇄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일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다.

(12)는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2절(모음)의 제6항, 제7항, 제8항이다. ‘으, 으, 애’와 관련하여, 변화 이전의 형태를 적게 하였으므로 이 표기법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 (13) ㄱ. ‘ㅣ’음은 ‘ㅔ’ 소리로 변해졌으므로 ‘ㅔ’로 적는다. 배(腹·梨·船) 등.  
 ㄴ.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의심(疑心)(○)/이심(×), 희다(희)(○)/히다(×), 늬(齒)(○)/니(×) 등.

(13)은 제3장 제2절의 제9항과 제12항으로 이들 모두, 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표기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으, 으, 애’의 변화에 비해, ‘이’와 ‘애’의 합류(13-ㄱ)나 어두음절의 ‘의>이’ 변화(13-ㄴ)는<sup>19)</sup>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에 발생하여 지금은 거의 완료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변화가 아니므로 (13-ㄱ)뿐 아니라 (13-ㄴ)에서도 그 변화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게 해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sup>20)</sup>

하지만 (13-ㄴ)의 예들을 모두 소리대로 적게 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되는 점이 있다. 한자음의 경우에 그 실현 위치(즉 어두와 비어두)와 관계없이 일관된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3-ㄴ)의 적용 대상을 한자어로 한정하고 고유어는

18) 현재 제주방언의 50대 화자들은 ‘애’와 ‘애’를 거의 변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60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으’의 변화(주로 ‘으>오’)는 ‘애’의 변화(‘애>애’)에 비해 10여년 정도 늦게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정승철 1995:29-30).

19) 제주방언의 ‘의’는 “非語頭音節에 한하여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만 실현되므로(정승철 1995:93) 현대 제주방언에서 ‘자음+의’의 음소 연쇄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인층의 발화에서 頭音 ‘ㄴ’이 구개음화하지 않은 ‘늬(齒, 蟲)’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제한된 분포로 인해 이를 자음(‘ㄴ’) 뒤에서 ‘의’가 실현된 예라고 하기에는 좀 주저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20) (12-ㄷ)의 규정을 감안할 때 (13-ㄱ)의 경우에는 ‘이>애’의 변화라는 역사적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언어학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표기 원칙상 현실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예들에서는, 표준어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은 현행 한글 맞춤법을 따라 적게 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소리나는 대로 적게 하는 것이 표기의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글 맞춤법'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가한 조항들도 나타난다.

(14)ㄱ. '녀'는 이중모음 'ㅔ'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도 발음되지 않으므로 'ㅔ'로 적는다. 궤기(魚·肉) 등.

ㄴ. 용언 어간의 끝 'ㅅ'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대로 적는다. 굿다(劃) : 굿언 등.

ㄷ. 용언 어간 '흐'는 줄어지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대로 적는다. 거명흐다 : 거명흐지 등.

ㄹ. 선어말어미 '-았/-었-'에 해당되는 형태는 '-았-/엇-'으로 적는다. 보았수다(○), 보았수다(✗)

ㅁ.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무끔, 보끔 등.

(14ㄱ)은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2절(모음) 제11항, (14ㄴ)-(14ㄹ)은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제2절(어간과 어미)의 제17항, 제18항, 제19항, (14ㅁ)은 제3절(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3항이다.

이들은 방언 표기법의 원리를 준용하기만 하면 따로 부가적 설명이 필요치 않은 조항이다. 표준어의 '외'가 '웨'로, 또 '-았/었-'이 '-았/엇-'으로 발음된다든지, 'ㅅ'이나 '흐-'가 안 줄어들어 불규칙적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무끄-(束), 보끄-(炸)'에 '-음/-ㅁ'이 결합하면 '무끔, 보끔'이 된다든지 하는 언급은 소리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문제될 바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기에 이들에 대해 별도의 표기법 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제주방언 표기법과 한글 맞춤법의 어형 대비표' 등의 부수 장치 또는 그러한 부수 규정을<sup>21)</sup> 마련하여 정보를 따로 제공해주는 것이 표기법의 일관성이

21) 그러한 부수 규정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른바 '방언 표준 발음법'이 가장 우선된다. 가령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3절(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5항의 '둘

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 IV. 맷음말

한국어의 방언 표기법이라면 한글 표기의 전통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원칙의 수립에서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한글 맞춤법의 간섭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러기에 방언 표기법은 전반적인 원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그 세부 항목에서는 유연성을 드러내야 한다.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서 발생하는 생경함과 느슨한 규정이 노정하는 무원칙함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전제하면서 방언 표기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언 표기법을 정하는 일은 해당 방언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표기법의 기반을 규범적 성격에 둘지 아니면 기술적 성격에 둘지, 또 그에 따라 세부 조항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표기 원칙으로 명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또 어찌 적어야 할지 등에 대해 연구자들의 폭넓은 조사·연구 및 사용자들의 총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표기법의 제정과 실제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 핵심어: 제주 방언, 방언 표기법, 형태음소적 원리, 음소적 원리

---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웃웃, 홀아방 등'에서, '꽃잎[꼰닙]'은 차치하고서라도 '웃웃, 홀아방' 등에 대해 제주방언 화자의 발음을 표기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웃웃[운뚱], 홀아방[홀라방]' 등에서 보듯, 제주방언에서는 선행하는 요소가 받침을 가진 말이고 후행하는 요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 선행어의 말음을 후행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하여 발음하는 복사 현상이 일반적이다(정승철 2001:307).

<참고문헌>

- 곽충구(2001), 「전사」, 『방언학사전』, 태학사, 292-295.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대출판부.
- 申昌淳(2003), 『國語近代表記法의 展開』, 태학사.
- 李基文(1963), 『國語表記法의 歷史的 研究』, 한국연구원[재수록; 『역대한국  
문법대계』 36, 탑출판사]
- \_\_\_\_\_ (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일조각.
- \_\_\_\_\_ (1983), 「한국어 表記法의 变遷과 原理」, 『韓國 語文의 諸問題』, 일  
지사, 47-77.
- 李秉根(1985), 「周時經」, 『국어연구의 발자취』(I), 서울대 출판부, 3-78.
- \_\_\_\_\_ (1986),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 問題」, 『국어생활』 4, 국어연  
구소, 24-45.
- 이병근·송철의·정승철·임주택·류양선(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  
학』, 서울대출판부.
- 李芻燮(1985),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의 表意性에 대하여」, 『국어생활』 3,  
국어연구소, 16-31.
- \_\_\_\_\_ (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출판부.
- 李芻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정승철(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태학사.
- \_\_\_\_\_ (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67-107.[재수록; 李秉根·郭忠求(1998), 『方言』, 태학  
사, 313-349]
- \_\_\_\_\_ (2001), 「제주 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305-314.
- \_\_\_\_\_ (2005),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 - ‘언문철자법’을 중심으로」, 『진  
단학보』 100, 221-261.[재수록; 이병근 외(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pp.69-93]

- 정진석 편(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LG상남언론재단.
- 최명옥(1998), 「방언」, 『새국어생활』 8-3, 국립국어연구원, 193-202.[재수  
록; 국립국어원 편(2007), 『방언 이야기』, 태학사, pp.19-27]
- \_\_\_\_\_ (2007), 「한국어 형태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강인문논총』 22,  
19-52.
- 제주방언연구회(1995), 「제주어표기법」, 『濟州語辭典』, 제주도.  
玄平孝·金鍾喆·金榮墩·姜榮峯·高光敏·吳昌命(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Abstract>

## Orthographic Principles for Cheju Dialect

Jung, Seung-chul(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imed to make some remarks on the principles of dialect orthography for Cheju dialect in Korean. To achieve the aim, we compared *Guid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pelling*(한글 맞춤법 통일안, 1989) and *Guide for Cheju Dialect Spelling*(제주어 표기법, 1995), and examined a point of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at. And then we pointed out mistakes of the orthographic principle in *Guide for Cheju Dialect Spelling*.

As a consequence, we argued that the morphemic principles must be applied to morphemes which manifest regular alternations but not to irregular alternations in dialect orthography. Thus most morpheme in Cheju dialect have a fixed representation by a single form of spelling, choosing the underlying form as representative shape, even though some morphemes which manifest irregular alternations are represented by the principles of phonemic orthography.

- Key Words: Cheju dialect, orthography, morphemic principle, phonemic principle